

정오표

작성일자 : 2021년 12월 02일

주거복지사 실력다지기 기본문제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페이지	번호	정오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79	163	㉠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9	309	정답 ④를 ②로 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5	014	지문 ② 종단적을 횡단적으로 해설의 횡단적을 종단적으로 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49	049	오타수정 ④ 총화평정서열척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5	177	<p>다음의 연령대별 선호하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표를 보고 176번부터 178번에 답하시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60-64세</th> <th>65-69세</th> <th>70-74세</th> <th>75-79세</th> <th>80세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주거 환경 개선</td> <td>11</td> <td>22</td> <td>23</td> <td>26</td> <td>11</td> </tr> <tr> <td>일상생활지원</td> <td>56</td> <td>43</td> <td>44</td> <td>44</td> <td>47</td> </tr> <tr> <td>안전지원</td> <td>22</td> <td>24</td> <td>22</td> <td>20</td> <td>31</td> </tr> <tr> <td>의사, 간호사 등 의료인의 가정 방문 서비스</td> <td>㉠ 9</td> <td>8</td> <td>8</td> <td>7</td> <td>9</td> </tr> <tr> <td>상담서비스</td> <td>㉡ 2</td> <td>3</td> <td>3</td> <td>3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100.0</td> <td>100.0</td> <td>100.0</td> <td>100.0</td> <td>100.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$\chi^2 = 6.465$, $df = (\ominus)$, $p = 0.011$</p> <p>177. 위의 표의 ㉠과 ㉡의 기대빈도로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.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>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㉠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/tr> <tr> <td>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.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6</td> </tr> <tr> <td>③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.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3</td> </tr> <tr> <td>④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3.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4</td> </tr> <tr> <td>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해설 ㉠ 8.2, ㉡ 2.6</p>	구분	60-64세	65-69세	70-74세	75-79세	80세 이상	주거 환경 개선	11	22	23	26	11	일상생활지원	56	43	44	44	47	안전지원	22	24	22	20	31	의사, 간호사 등 의료인의 가정 방문 서비스	㉠ 9	8	8	7	9	상담서비스	㉡ 2	3	3	3	2	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	㉠	㉡	①	9	2	②	8.2	2.6	③	18.6	4.3	④	23.9	5.4	⑤	25	25
구분	60-64세	65-69세	70-74세	75-79세	80세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거 환경 개선	11	22	23	26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상생활지원	56	43	44	44	4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전지원	22	24	22	20	3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사, 간호사 등 의료인의 가정 방문 서비스	㉠ 9	8	8	7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담서비스	㉡ 2	3	3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㉠	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	9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	8.2	2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	18.6	4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	23.9	5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	25	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21	210	정답 ⑤를 ②로 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28	227	정답 ②를 ③으로 변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공통사항	
<p>다중주택 요건에서 연면적이 660㎡ 이하로 개정 : 주거복지총론 038p, 340p /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281p / 기본문제집 15p 018번, 27p 042번</p>	
페이지	주거복지실무와 적용
033	밑에서 세 번째 줄 : 비율척도에서 '0' 이란 어떠한
093	2) 카이제곱검증 다섯째 줄 : 카이제곱검증은 추리동계이므로 기본적으로
페이지	응어정리집
072	카이제곱검증은 비모수통계로 t-검증과 분산분석은 모수통계로 정정
093	2) 카이제곱검증 다섯째 줄 : 카이제곱검증은 추리동계이므로 기본적으로

페이지		주거복지총론																
091	<p>〈표 3-4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자격(일반공급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입주자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통기준</td> <td>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순위</td> <td> <p>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</p> <p>나.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)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)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)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) 참전유공자 <p>다.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</p> <p>라.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(무주택자 기준 예외)</p> <p>마. 북한이탈주민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바. 등록장애인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사.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의 부양자(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으로 한정)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(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에 한하며,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)</p> <p>아.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(무주택자 기준 예외)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자.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</p> 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순위</td> <td> <p>차.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카. 가목~라목의 기준에 준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타. 등록장애인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입주자격		공통기준	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		1순위	<p>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</p> <p>나.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)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)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)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) 참전유공자 <p>다.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</p> <p>라.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(무주택자 기준 예외)</p> <p>마. 북한이탈주민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바. 등록장애인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사.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의 부양자(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으로 한정)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(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에 한하며,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)</p> <p>아.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(무주택자 기준 예외)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자.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</p>		2순위	<p>차.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카. 가목~라목의 기준에 준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타. 등록장애인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				
	구 분	입주자격																
	공통기준	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																
1순위	<p>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</p> <p>나.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)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)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)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) 참전유공자 <p>다.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</p> <p>라.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(무주택자 기준 예외)</p> <p>마. 북한이탈주민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바. 등록장애인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사.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의 부양자(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으로 한정)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(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주에 한하며,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)</p> <p>아.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(무주택자 기준 예외)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자.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</p>																	
2순위	<p>차.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 <p>카. 가목~라목의 기준에 준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타. 등록장애인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,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)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</p>																	
094	<p>〈표 3-6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입주자격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선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통기준</td> <td>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tr> <td>가. 전용면적 50㎡ 미만</td> <td>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%, 2명인 경우 60%) 이하인 자(50%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,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㎡ 이하 주택에 한정)</td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해당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(2) 제2순위 :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연접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(3) 제3순위 : 그 외 </td> </tr> <tr> <td>나. 전용면적 50㎡ 이상 60㎡ 이하</td> <td>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%, 2명인 경우 80%) 이하인 자(단독세대주 제외)</td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(2) 제2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(3) 제3순위 : 그 외 </td> </tr> <tr> <td>다. 전용면적 60㎡ 초과</td> <td>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%, 2명인 경우 110%) 이하인 자(단독세대주 제외)</td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(2) 제2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(3) 제3순위 : 그 외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입주자격	선정기준	공통기준	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	-	가. 전용면적 50㎡ 미만	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%, 2명인 경우 60%) 이하인 자(50%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,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㎡ 이하 주택에 한정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해당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(2) 제2순위 :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연접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(3) 제3순위 : 그 외 	나. 전용면적 50㎡ 이상 60㎡ 이하	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%, 2명인 경우 80%) 이하인 자(단독세대주 제외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(2) 제2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(3) 제3순위 : 그 외 	다. 전용면적 60㎡ 초과	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%, 2명인 경우 110%) 이하인 자(단독세대주 제외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(2) 제2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(3) 제3순위 : 그 외
	구 분	입주자격	선정기준															
	공통기준	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	-															
	가. 전용면적 50㎡ 미만	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%, 2명인 경우 60%) 이하인 자(50%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,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㎡ 이하 주택에 한정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해당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(2) 제2순위 :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연접 시·군·자치구 거주자 (3) 제3순위 : 그 외 															
나. 전용면적 50㎡ 이상 60㎡ 이하	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%, 2명인 경우 80%) 이하인 자(단독세대주 제외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(2) 제2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(3) 제3순위 : 그 외 																
다. 전용면적 60㎡ 초과	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%, 2명인 경우 110%) 이하인 자(단독세대주 제외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(2) 제2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(3) 제3순위 : 그 외 																